

## 수 원 가 정 법 원

### 제 2 가 사 부

#### 판 결

사 건 2022드합4407(본소) 이혼 등  
2022드합4414(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김형진 (810429-1489926)  
주소 화성시 동탄대로8길 65, 2481동 302호(산척동, 더레이크시티  
부영2단지)  
등록기준지 군산시 죽성동 36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관, 김택빈

피고(반소원고) 최은지 (840724-2797816)  
주소 화성시 동탄대로8길 65, 2481동 302호(산척동, 더레이크시티  
부영2단지)  
등록기준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3-9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소라

사 건 본 인 김가현 (111208-4230337)  
주소 화성시 동탄대로8길 65, 2481동 302호(산척동, 더레이크시티  
부영2단지)  
등록기준지 화성시 병점1로 82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1. 30.

## 주 문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7,840,000원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12. 1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8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7.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그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원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면접교섭에 관한 안내를 받고, 위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접교섭을 진행한다.
  - 나.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횟수와 일정, 장소와 방법은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정한 규칙과 절차, 상담결과 등에 따라 정해지고 변경될 수 있다.
  - 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및 교육에 적극 협력한다.
  - 라.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 ▣ 본소 청구취지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4,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2030. 12. 7. 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sup>1)</sup>

### ▣ 반소 청구취지

1. 주문 제1, 2, 5항과 같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한편,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는 그 신청취지로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상호간에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조정조항의 내용을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이 조정 불성립으로 인해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이 부분 신청취지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한다.

## 1. 기초사실

가. 원고(1981. 4. 29.생)와 피고(1984. 7. 24.생)는 2011. 5.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슬하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김가현(여, 2011. 12. 8.생)을 두고 있다.

다. 원고는 2022. 5. 3.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으며, 피고도 2022. 6. 10. 원고를 상대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2. 5. 8.경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3. 10. 19.) 현재까지 그 별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sup>2)</sup> 위 별거 기간 동안 사건본인을 보호·양육한 당사자는 피고이다.

마. 한편, 수원가정법원은 2022. 6. 13. ①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임시양육비로 2022. 6.부터 월 140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한편, ② 원고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임시로 정하는 내용의 직권 사전처분을 하였다. 또한, 수원가정법원은 2022. 9. 15.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직권 사전처분을 추가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각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sup>2)</sup> 이 사건 반소장 및 제1회 변론조서 등 참조. 한편, 원고도 2022. 5. 7.부터 피고와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원고가 제출한 양육관계진술서 등 참조).

## 가. 공통되는 법리(재판상 이혼제도에서의 유책주의 원칙 및 각 이혼사유의 상호성)

1)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등 참조).

2)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등 참조).<sup>3)</sup>

3) 따라서 법원이 이혼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혼원인 중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의 존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 나. 구체적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적극적 당사자(이혼을 구하는 당사자)의 책임이 소극적 당사자(이혼청구의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혼인관계의 파탄'이라 함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부부 공동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그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객관적으로 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을 제1 내지 14, 16 내지 20,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 및 그 정도, ② 원고와 피고가 모두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상호

---

이혼사유를 각기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 내용은 '선택적 이혼사유'를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된다(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에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가 2022. 5. 8.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3. 10. 19.) 현재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장기간의 별거 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상호간에 부부로서의 정신적·육체적·사회적 교류 자체가 사실상 단절되어 부부 공동체로서의 실질이 형해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구체적인 혼인파탄의 시점은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22. 5. 3.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제826조), 즉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러한 부부간의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의무에 속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입법자가 혼인관계 파탄을 야기한 유책사유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21. 초경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출장을 가 체류하던 중 그곳에서 만난 현지 여성과 교제하며 성관계까지도 갖게 되었는데, 귀국한 이후에도 해당 여성과 위챗(WeChat)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장시간 영상통화를 하는 등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원고의 위 부정행위는 2021. 6. 20.경 피고에게 발각되었고, 당시 피고가 추궁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현지 여성과의 성관계를 포함한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 일체를 시인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부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가 약화될 정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었다.

② 한편, 원고는 위 중국 현지에 체류하던 중인 2021. 1.경부터 2021. 4.경 사이에 '까오신 멧쟁이들'이라는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성매매가 수반되는 퇴폐 마사지 업체에 관한 정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도적으로 제공하였고, 또 실제로도 해당 지인들과 함께 해당 마사지 업체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성매매 사실은 2021. 7. 하순경에 이르러 피고에게 발각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위 2021. 6. 20.경부터 지속되고 있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③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21. 12. 26. 새벽에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외 박선아와 일부 옷을 벗은 상태로 진한 입맞춤 등을 하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성관계에까지 나아갔는데, 당시 사건본인과 다른 장소에 일시 기거하고 있던 피고는 위 주거지 거실



내에 설치된 홈 CCTV를 통해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2022. 4. 하순경에 이르러 원고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피고가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 위 광선아로부터 원고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받게 되자 결국에는 피고도 원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2. 6. 2. 위 광선아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2. 12. 21. 원고와 위 광선아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뒤 위 광선아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서울가정법원 2022드단120285)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즉,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원인은 원고의 위 일련의 반복된 부정행위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유책사유에서 기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부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마저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원고는 소외 광선아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갈등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언동만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현저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4) 나아가, 이혼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의 원인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이유 없고(달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3. 반소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연령,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그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과 원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다(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소외 1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위 1,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소외 1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4.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재산분할의 기준

1)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은 물론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까지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sup>4)</sup>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2) 또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3)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0. 19.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일로서 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2022. 5. 3.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 부부 공동

4)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 참조).

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가액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거나, 제출된 서증 및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에 대한 회신 등에 나타난 가액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고, 위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배치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특별히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부분은 그 재산의 존재나 객관적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그 이유로 한다. 한편, 원고는 2023. 10. 19.에, 피고는 2023. 10. 18.에 각기 자신이 주장하는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분할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는바, 위 최종적으로 제출된 분할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그 진술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증거 등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가액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가액 중 적은 가액을 기준으로 그 진술이 일치한 것으로 보아 분할재산명세표를 정리하기로 한다. 또한, 가액이 10만 원 미만인 금융자산은 계산의 편의상 그 분할재산명세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피고의 9,000만 원 상당 우리은행 가계일반자금대출(계좌번호: 1200-505-129694,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가 피고의 모(母)인 소외 이명숙에 대한 대여금(위 이명숙의 주택 구매자금 조달과 관련된 대여금)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고,<sup>5)</sup>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가 위

이명숙에 대한 수익 분배금 내지 증여금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살펴건대, ① 위 이명숙에게 지급할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쌍방 당사자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즉,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대출의 실행과 위 이명숙에 대한 9,000만 원의 지급이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쌍방 당사자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②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체의 원인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적 원인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과정에 구체적으로 현출되어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위 이명숙에 대한 9,000만 원의 지급행위가 대여의 실질인지, 아니면 수익 분배 내지 증여의 실질인지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점, ③ 그렇다면 피고가 위 이명숙에 대하여 9,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분할대상 재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해당 자금(9,000만 원)의 출연(出捐)을 위한 일련의 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역시도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분할대상 채무로 포함시킬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 반영과 관련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보유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합계는 1,128,918,234원이다.

5)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이명숙에 대한 9,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고가 보유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다.

6)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분할대상 채무로 주장하고 있다.

## 다.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인정되는 소득의 정도, ② 원고와 피고의 재산상태 및 재산형성의 경위, ③ 혼인기간 중 가사노동 및 사건본인의 양육은 모(母)인 피고가 사실상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 기여는 가사노동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점(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 등 참조), ⑤ 이후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는 점[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므3706(본소), 2009므3713(반소)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 참작사유가 청산적 요소에 한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아래 제5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이다], 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려되어야 할 부양적 요소, ⑦ 분할대상 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되어야 할 사유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한다.

### 2) 재산분할의 방법

가)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당사자의 의사, 이용 및 관리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 명의로 된 각자의 재산을 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의 가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합계는 1,128,918,234원이고, 그 중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의 가액은 451,567,293원(= 1,128,918,234원 × 0.4, 원 미만 단위 버림)인바, 원고가 자기 명의로 보유한 재산의 가액은 343,723,727원이므로,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그 차액인 107,840,000원(= 451,567,293원 - 343,723,727원, 만 원 미만 단위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소구하지 않고 있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7,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판단

####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양육의사, 양육환경, 사건본인의 연령 및 성별, ② 원고와 피고가 2022. 5. 8.경부터 별거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3. 10. 19.) 현재까지 계속해서 피고가 주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보호·양육하고 있고, 현재 사건본인도 원고보다는 피고와 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에 대한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재와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하면서 원고와의 면접교섭이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보다 이로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나.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①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경제력, 부담의 형평성, 사건본인의 연령과 신분, 그 양육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② 사전처분에서 정해진 임시양육비의 액수와 원고의 실제 임시

양육비 지급 여부(피고의 2023. 11. 28.자 참고서면에 의하면, 원고가 2022. 6. 25.부터 2023. 11. 24.까지 위 사전처분에서 정해진 임시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양육비를 소구하고 있는데, 위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이 2022. 6. 14.임은 기록상 분명한 점[즉, 2022. 6. 14. 이전의 양육비는 피고의 소구 범위에서 제외되었는바, 그렇다면 2023. 12. 13.까지의 소구기간(2022. 6. 14.부터 2023. 12. 1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월 140만 원씩의 비율로 임시양육비가 전액 지급(매달 25일경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2022. 6. 14.부터 2023. 12. 13.까지는 월 140만 원씩으로, 2023. 12. 1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80만 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23. 12. 13.까지는 원고의 양육비 분담의무가 이미 이행완료된 상태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산일은 2023. 12. 14.로 보아야 한다).

#### **다.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직권 판단)**




사건본인의 부(母)인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연령, 성별, 원고와의 친밀관계 내지 정서적 유대관계의 정도, 양육상황, 통상적인 형태로 대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그 면접교섭의 실시와 관련하여 쌍방 당사자 간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주문 제7항과 같이 정한다.

####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반소 위자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자 및 양



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화	<u>박미화</u>	
	판사	허민	<u>허민</u>	
	판사	구창규	<u>구창규</u>	

별지

### 분할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비고	
원고	적극 재산	1	부산 동구 범일동 252-872 대 69.4㎡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건물(45.73㎡)	450,000,000	쌍방 일치하는 진술
		2	2016년식 SM6 자동차(11가0437)	10,580,000	쌍방 일치하는 진술
		3	우리은행 예·적금(1002-635-675107)	2,864,530	쌍방 일치하는 진술
		4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1073-105-981546)	5,360,000	쌍방 일치하는 진술
		5	하나은행 예·적금(829-910255-46707)	11,849,053	쌍방 일치하는 진술
		6	새마을금고 예·적금(3827-10-088607-1)	486,471	쌍방 일치하는 진술
		7	교보생명보험 예상해지환급금(202086000651)	38,767,415	쌍방 일치하는 진술
		8	동양생명보험 예상해지환급금(105767357)	15,230,367	쌍방 일치하는 진술
		9	삼성화재해상보험 예상해지환급금(51401383340000)	571,280	쌍방 일치하는 진술
		10	삼성화재해상보험 예상해지환급금(50400579370000)	43,734,775	쌍방 일치하는 진술
		11	삼성증권 주식회사 예수금	8,319,836	쌍방 일치하는 진술
		12	주식(크린앤사이언스 400주)	5,960,000	쌍방 일치하는 진술
	소계			<b>593,723,727</b>	
	소극 재산	1	우리은행 가계일반자금대출(1200-605-293999)	40,000,000	쌍방 일치하는 진술
		2	하나은행 가계일반자금대출(829-980086-38642)	30,000,000	쌍방 일치하는 진술
3		현대해상화재보험 주택담보대출	180,000,000	갑 제10호증	
소계			<b>250,000,000</b>		
원고의 순재산			<b>343,723,727</b>		
피고	적극 재산	1	화성시 산척동 721 더레이크시티부영2단지 2481동 302호	800,000,000	을 제32호증 (2023. 9. 29. 기준 KB 부동산 시세자료)
		2	우리은행 저축예금(1002-107-415382)	147,300	쌍방 일치하는 진술
		3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1073-111-297365)	3,080,000	쌍방 일치하는 진술
		4	새마을금고 예금(3827-10-066158-4)	260,044	쌍방 일치하는 진술
		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예상해지환급금(6R132454)	5,568,746	쌍방 일치하는 진술
		6	삼성화재보험 예상해지환급금(50300971690000)	36,138,417	쌍방 일치하는 진술
	소계			<b>845,194,507</b>	
	소극 재산	1	새마을금고 대출(9301-2341-9666-5)	60,000,000	쌍방 일치하는 진술
		소계			<b>60,000,000</b>
	피고의 순재산			<b>785,194,507</b>	
원.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b>1,128,918,234</b>		

끝.